

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351
----------	------

2023년 12월 19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0월 16일, 봉양순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3년 12월 19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봉양순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현재 보호수로 지정하는 일반적인 노목, 거목, 희귀목 등에 한정하지 않고 역사적,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함(안 제3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호수로 지정하는 일반적인 노목, 거목, 희귀목 등에 한정하지 않고 역사적,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보호수에 관한 사항은 「산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) 제13조부터 제13조의6¹⁾까지 규정되어 있으며, 시장의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²⁾로 규정하고 있음.
- 현재 동 조례에서 노목(老木), 거목(巨木), 희귀목(稀貴木)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으나,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나무³⁾ 등 문화적으로 상징성을 갖춘 나무나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나무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호수 지정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바,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한편, 보호수의 지정 절차를 보면 나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 요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지정 요건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나,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전문성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보호수 지정 등에 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임.

1) 제13조(보호수의 지정·고시), 제13조의2(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), 제13조의3(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), 제13조의4(보호수의 지정해제), 제13조의5(보호수 심의위원회), 제13조의6(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)

2) [시행 2023. 10. 4.] [서울특별시조례 제8970호, 2023. 10. 4., 개정]

3) 안중근의사기념관 와룡매(※언론보도: 사연 많은 남산 와룡매, 이번엔 강풍에 부러져, 조선일보(2023.06.27.))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노목”을 “역사적·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보호수의 지정·고시) ① 시 장은 <u>노목</u> (老木), 거목(巨木), 희 귀목(稀貴木) 등으로서 특별히 보 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 (이하 “보호수”라 한다)로 지정 하여야 한다. ② ~ ⑧ (생략)	제3조(보호수의 지정·고시) ① --- -- <u>역사적·학술적 가치 등이 있 는 노목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⑧ (현행과 같음)